

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94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2. 10.

발의자 : 이 민 근 의원 외 5인

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약칭의 사용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서 약칭의 사용조항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2조제1항 및 제5조)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서 해당조항을 정비함(안 제4조 제3항, 제6조)

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

- 지방자치법 제90조, 제91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제1항 중 “의회”를 “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 제3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사무직원의 정원”을 “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 “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”을 “「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<삭제> <삭제> <삭제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<u>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</u> ②(생략)</p>	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<u>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전문위원) ① ~ ② (생략) ③ <u>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</p>	<p>제4조(전문위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</p>
<p>제5조(직원의 정원) <u>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28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</u></p>	<p>제5조(직원의 정원) <u>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는</u> 「<u>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</u>」</p>
<p>제6조(시행규칙) <u>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6조(시행규칙) <u>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</u></p>

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

(일부개정) 2007.04.27 조례 제130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"정원" 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국장)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.
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전문위원)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
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28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2003.02.28, 2006.4.7, 2007.4.26>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